

[별표] 추가적 가중·감경 금액(제8조 관련)

1. 가중사유 및 비율

- 가.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소속 임원·종업원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, 조작,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
- 나.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
- 다.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

2. 감경 사유 및 비율

- 가.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
- 나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
- 다.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
- 라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